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선사업 대상자에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추가(안 제1조)
- 나.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매점 규모 제한 삭제(안 제2조)
- 다.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내용 추가(별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2) 「노인복지법」 제25조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를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를 “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서”로, “허가 또는 위탁 운용하고자”를 “허가를 받고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를 “구미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 관리공단의 장(이하 “시장 등”)”으로,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를 “등을 설치 허가”로, “시보·인터넷·반회보 등에 게재”를 “시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위탁 받아 운영 하고자”를 “허가를 ”로, “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를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시장에게”를 “시장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장이 정한 소정양식), 공공 시설물 위탁 관리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의 제목 “(우선허가)”를 “(우선 사용·수익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 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이”를 “시장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의”를 “시장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의”를 “시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는 시장은”을 “때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설치) 계약과 공공 시설물 위탁운영”을 “(설치)”로, “기타”를 “등 기타”로 한다.

제8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식]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대상 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인	영 업 장 소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_____대(커피, 음료수 등)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동 조례 제4조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 ·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 등급이 1~2 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 등급이 3~4 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3	장애인 등급이 5~6 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비과세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 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 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는 위탁 관리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자활 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에
대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1. 2. (생략)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
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
의 경우 그 규모가 5㎡를 초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사전공고) 구미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매점 사용 및 자동판
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
보·인터넷·반회보 등에 게
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사용 및 자동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1항에서 정한 공공시
설에서 -----
----- 허가를 받고자 --

-----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구미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장(이하 "시장 등" -----
----- 등을 설치 허가 -----

-- 시 홈페이지 등에 -----

-.

제4조(신청) -----

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받아 운영 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시장이 정한 소정양식), 공공 시설물 위탁 관리 신청서

2.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시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의거 사용(설치) 허가자를 선발하고 이 외는 시장이 정한다.

1. 수급자인 장애인

2. 중증 장애인(저소득장애인 우선)

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 허가를 -----

-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 각 호의 -----

----- 시장 등에게 -----

1. -----

----- (별지
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신 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설치) 허가
를 받은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
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설치) 허가에 대한 기득
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
며 시장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사업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⑤취급 품목·판매가격·건물
및 기계관리·주변청소 등에 대
하여는 시장의 지시 감독을 받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
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
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
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시장 등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장 등의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 시장 등의 -----

아야 하고 건물 기계 등 기타 시 소유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시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위반할 <u>시는 시장은</u> 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 ⑥ ----- <u>때 시장</u> <u>등은</u> ----- ----- -----.
제7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 기 사용(<u>설치</u>) 계약과 공공 시 <u>시설물 위탁운영</u>에 따른 시설 사 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u>기타</u>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 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 ----- (<u>설치</u>) ----- ----- ----- <u>등 기</u> <u>타</u> ----- -----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u>정할 수 있다.</u>	제8조(시행규칙) ----- ----- - <u>정한다.</u>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42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배 재 영
	담 당	정 연 원
	담 당 자	정 숙 희 (480-5073)